

		시 민			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21729	주무관	행정협력팀장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
결재일자	2018. 10. 29.				
공개여부	부분공개(5)				
방침번호		협 조	<i>성과관리팀장</i> <i>주민지원팀장</i>		

I · SEŌUL · U

## 2018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및 운영자 표창계획

2018. 10.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약 배 자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와이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 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, 플랜, 앵커시설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
# - 20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-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계획

20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시장표창(상장)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

## 1 표창 개요

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표창조례

훈 격 : 서울특별시장

표창종류 및 대상

○ 상 장 : 우수기관 25개

- 자 치 구 : '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최우수구(1) 및 우수구(14)

- 자치회관 : '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 우수사례 선정 자치회관(10)

○ 표 창 장 : 공무원 및 시민 100명

- 공 무 원(50명) :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유공 공무원

- 시 민(50명) : 우수사례 제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

### < 자치회관 운영평가 개요 >

▶ 사 업 명 : 2018년 자치회관 운영평가

▶ 평가기간 : 2018. 8~9월

▶ 평가방법 : 전문가(6명)에 의한 서면평가(65%) 및 현장평가(35%)

▶ 평가결과 : 최우수 1개구, 우수 14개구, 장려 10개구, 우수사례 선정 10개 자치회관

## 2 세 부 계 획

### 1 기관표창

- 대 상 : '18년 자치회관 운영평가 (최)우수구 및 우수사례 자치회관

구 분	자치구(자치회관)명	비 고
최 우수(1)	양천구	
우 수(14)	중구, 성동구, 광진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강동구	
우수사례(10)	용산구 후암동, 성동구 금호1가동, 광진구 자양2동, 광진구 중곡4동, 도봉구 창2동, 은평구 신사2동, 금천구 독산4동, 금천구 독산1동, 영등포구 대림1동, 동작구 흑석동	

- 표 창 일 : '18. 11월 중
- 표창종류 : 상장
- 표창방법 : 자치구별 전달·전수(구 자치행정과 전달)
- 선정절차 : 자치회관 운영평가 심의회('18. 10. 15.) 결과에 의한 우수 자치구 및 우수사례 자치회관 선정 ⇒ 상장번호 부여(인사과)

### 2 유공 공무원 및 시민 표창

- 추천대상 : 유공 공무원 및 시민 100명
  - 공 무 원(50명) :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(자치구별 2명)
  - 시 민(50명) : 우수사례 제출 자치회관의 주민자치위원(자치구별 2명)
- ※ 추천권자 : 구청장(조사자 : 자치회관 담당부서장)

○ 표창시기 : '18. 12월 중

○ 표창종류 : 표창장

○ 표창방법 : 자치구별 전달·전수

- 공무원 : 표창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

- 시 민 : 표창장 수여(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부상 수여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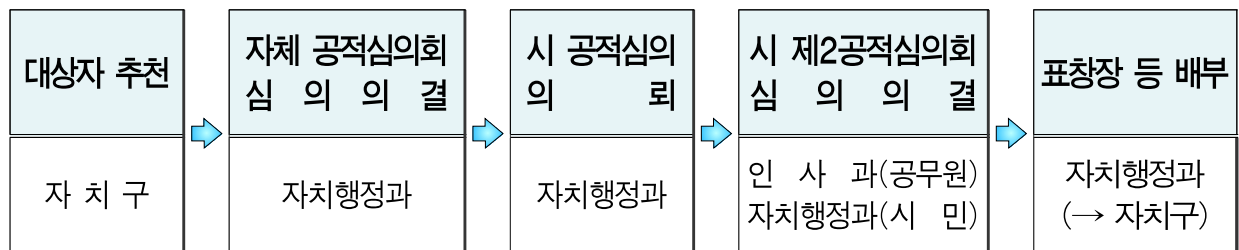
〈 공직선거법 검토 〉

▶ 관련규정 : 공직선거법 제112조

▶ 검토결과 :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.

「서울특별시표창조례」 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○ 표창절차



※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(붙임1-1)로  
갈음하여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

○ 자체(행정국) 공적심사위원회 개최

- 심의방법 :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

- 심사위원

▶ 위원장 : 행정국장

▶ 위 원 : 총무과장, 인사과장, 인력개발과장, 자치행정과장

## □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(결격사유)

※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: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(2018. 11. 23. 예정)

### 〈공 무 원〉

- 서울시(사·자치구)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)
  - 군복무기간 제외 및 출산·육아휴직 포함
-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(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)
-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
  - 말소기간 : 불문경고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
- 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
-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
-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중인 자
-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
-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※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
- 기타 공·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(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, 현저한 공적사례 증빙자료 제출)

#### ◆ 현저한 공적 사례(예시) - 증빙자료 제출

- 1)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
- 2)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
- 3)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

## 〈시 민〉

- 수공기간 :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
  - 단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-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(표창조례 제6조)
  - 이중표창 :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
  - 재 표 창 :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-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
  -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(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)
  -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
  -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

### 〈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〉

- ▶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(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)
- ▶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,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

-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  - 국세기본법, 관세법,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
    - ▶ 국세·관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'3억원' 이상의 체납자
    - ▶ 지방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'1천만원' 이상의 체납자
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- **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**
  - ▶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  - ▶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**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**

— < 관련법 위반자 확인 방법 > —

- ▶ 국세(<http://www.nts.go.kr>) : 국세청 → 정보공개 →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
- ▶ 관세(<http://www.customs.go.kr>) : 뉴스/소식 → 공고/공시 → 공고
- ▶ 서울시지방세(<http://finance.seoul.go.kr/archives/33176>)
- ▶ 산업안전보건법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  
알림마당 → 알려드립니다 → 공고
- ▶ 공정거래법 :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tc.go.kr>)  
심결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회사명 입력
- ▶ 근로기준법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  
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조회

-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
-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, 순서대로,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
  - ※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, 산업재해 명단,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

**표창취소**

-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.
-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,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함.
-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.



### 3 소 요 예 산

#### 포상금 : 10,000천원

- 산출내역 : 50명 × 200,000원 = 10,000,000원
- 예산과목 : 행정국 인사과,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, 포상관리,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, 포상금

#### 표창장 제작 : 688천원

- 산출내역 : 125매 × 5,500원 = 687,500원(상장 25, 표창장 100)
- 예산과목 : 자치행정과, 행정운영경비(행정국 자치행정과), 기본경비, 기본경비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### 4 행 정 사 항

#### 추진일정

- 표창 대상자 추천(자치구) ..... '18. 11. 6.(화)
-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 ..... '18. 11. 8.(목)
- 제2공적심의회 의뢰 ..... '18. 11. 9.(금)
- 표창장 수여 ..... '18. 12월 중

#### 추천서 제출기한 : '18. 11. 6.(화)

#### 제출서류

-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(총 4종)
  -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(붙임1-1)
  - 공적조서 1부(붙임1-2)
  - 공적요약서 1부(붙임1-3)
  -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(붙임1-4)

○ **유공 시민(총 4종)**

- 공적조서 1부(붙임2-1)
-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(붙임2-2)
-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(붙임2-3)
-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(붙임2-4)

**협조사항**

- 자치회관 운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협조 : 인사과
- 유공 시민 표창 협조 : 자치행정과(주민지원팀)

- 붙 임**
1. 자치회관 유공 공무원 추천 제출서식(1~4) 1부.
  2. 유공 시민 추천 제출서식(1~4) 1부.
  3. 상장 및 표창장 양식 각 2매.

#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

〈엑셀로 작성〉

■ 대상자 : 총 2명

연번	소속	직급	대외직명	성명 (단체명)	주민등록 번호	재직기간	징계	상훈 (2년 이내)	비위사실 (6개월 이내)	기타	표창일자 (사업어듬이)
1	인사과	지방행정 사무관	지방행정 사무관	○○○	○○○○○○- ○○○○○○	07-05 <small>예) 7년 5개월인 경우</small>	(예시) 08.04.30 견책 금품수수 <small>※ 사면, 말소된 경우는 사면(말소)일자 별도 표기</small>	(예시) 09.11.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	(예시) 12.08.23 주의 (서울시 감사담당관)	해당 없음	2018.2.28
2	○○구 총무과	지방행정 주사보	주무관	○○○	○○○○○○- ○○○○○○	03-02 <small>예) 3년 2개월인 경우</small>	해당없음	해당없음	12.08.23 주의 (○○구 감사담당관)	해당 없음	

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,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,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8. . .

작성자 : 추천부서 상훈담당 (직급) (성명)  
 확인자 : 추천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·인)  
           감사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·인)  
           인사부서장 (직급) (성명) (서명·인)

**<감사부서장,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>**  
 - 구·투자출·외부기관 → 시(사업부서)로 추천  
 :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
 - 시(사업부서) → 인사과로 추천 : 작성 생략

〈작성시 참고사항〉

- ① 징계 :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, 징계종류 및 사면·말소 여부 표기
- ② 상훈 :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
- ③ 비위사실 :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·경고·주의 처분 표기
- ④ 기타 :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,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

※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,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,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(※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)

※ 추천부서(사업부서)에서 자치구·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,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

# 공 적 조 서 (개인 및 기관)

(1) 성명(기관명)											(한 자)	
(2) 주민등록번호												- (3) 군번 (군인의 경우)
(4) 등록기준지 (국적)	기재생략											
(5) 주 소	기재생략											
(6) 직 업						(7) 소 속						
(8) 직 위						(9) 직급(등급, 계급)						
								년			월	
(11) 공적요지 (200자 내외)						(12) 공적분야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><b>&lt;기관 추천&gt;</b>                     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       (1)기관명, (11)공적요지, (13)추천                      훈격, (15~18)조사자, (27)공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란만 기재함</p> </div>												
(13) 추천훈격	서울특별시장					(14) 추천순위	기재생략					
조 사 자												
(15) 소 속						(16) 직 위						
(17) 직 급						(18) 성 명	(인)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><b>&lt;조사자, 추천관&gt;</b>                      - 조사자 : 추천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- 추천관 : 기관장</p> </div>												
위와 인합니다.								2018년			월 일	
추 천 관											(인)	

## 주요학력 및 경력
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
### 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
### (27) 공 적 사 항

--



#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

■ 대상자 : 총 명 (명단 첨부)

## 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

구분	결격요건	검토결과
재직기간	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	(예시) 해당 없음
상훈	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	해당 없음
징계	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	해당 없음
	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※ 말소기간 : 불문경고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	해당 없음
훈계 등	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	해당 없음
업무수행기간	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(사업용품이와 조직개편 예외) ※ 단, 사업용품이의 경우,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,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	해당 없음
퇴직	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	해당 없음
기타	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	해당 없음

※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

## ■ 공직선거법 검토

사업명	검토내용	검토결과
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유공 표창	-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-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-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	(예시)적법

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8년 월 일

확인자 (추천부서장)

(인)

# 공 적 조 서

(1) 성 명				(한자)			
				(원명)			
(2) 생년월일				(3) 군번 (군인의 경우)			
(4)등록기준지(국적)							
(5) 주 소							
(6)직 업	(7) 소 속						
(8) 직 위	(9) 등급(직급, 계급)	(10) 근무기간					
(11) 공적요지(50자내외)	(12) 공적분야						
(13) 추천훈격	서울특별시장	(14) 추천순위					
조 사 자							
(15) 소 속		(15) 직 위	<b>담당 부서장</b>				
(17) 직 급		(18) 성 명	(인)				
<p>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천 관 <b>본청 실·국·본부장/구청장/사업소장(본청소관국장)</b> (인)</p>							



주요 학력 및 경력
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		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	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		
(27) 공 적 사 항			
<p style="color: red;">※ 공적기간(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)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</li> <li>- 시기·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 사실위주로 작성</li> </ul> <p style="color: red;">※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, 시 공적심의에서 제외</p>			
*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			



#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(추천부서용)

1.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

성 명 (단 체 명)	생 년 월 일 (단체등록 번호 등)	주 소	비 고 (연락처)

2. 공적내용

※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

3. 확인내용

○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

○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

이중표창 및 재표창	범죄경력	산업재해 공포	공정거래법 위반	근로기준법 위반	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	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
예시) 무	벌금 150 (06.6.30)	중대재해 (06-216호)	고발 1 과징금 1	-	-	언론보도 (06.7.1)

※ **범죄경력 확인** :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

- 음주운전,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

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 하였으며,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18 . . .

조사자	직위	성명	(인)
확인자	직위	성명	(인)

※ 조사자는 담당, 확인자는 부서장

##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(피추천인용)

(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)

표창후보자

성명 (단체명)	생년월일 (단체등록번호 등)	주소	비고 (연락처)

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 및 「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」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.

※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

2. 향후,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, 표창의 철회·취소 등 시장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18 . .

성명 (서명)

### 개인정보 제공동의 (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)

❖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1.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

- ㉠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,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
- ㉡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
(※ 공개정보 : 성명, 소속, 표창일자, 공적내용)
- ㉢ 표창수여증명서 발급

2.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: 표창기록부는 영구,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

동의  동의하지 않음

## 《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》

※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'부서 표창 추천일'을 기준으로 함

1. 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)
2.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  - ▶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 - ▶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- ▶ 3년 미만 징역·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·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- ▶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
3.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
  - ▶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  - ▶ 「공정거래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   -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
    -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  - ▶ 최근 3년간,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 - ▶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
    - 국세·관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'3억원' 이상의 체납자
    - 지방세 :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(서울시) '1천만원'이상의 체납자
4.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(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)

제 호

# 상 장

최우수구

양 천 구

위 자치구는 자치회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, 특히「20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」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

2018년 11월 일



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

제 호

# 상 장

예 창 의 상

※ 사례별로 상장명 달리 부여

구

자치회관

위 자치회관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한 결과 「2018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」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

2018년 11월 일



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

제 호

# 표 창 장

구 ○○과

지방행정○○○ ○○○

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, 특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

2018년 12월 일



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



제 호

# 표창장

○○구 ○○○동  
○○○

귀하께서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

2018년 12월 일



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